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2570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.

발 의 자 : 문진석·김문수·강준현
윤종균·박용갑·이연희
서영석·서미화·이재관
장종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표시·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,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흐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이 표시·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·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상품등의 용량, 중요 원재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 역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상품등의 용량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내용과 표시·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4조제1

항).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나. 상품등의 용량, 규격, 주요 원재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| |
|--|--|
| <p><u>나.·다.</u>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| <p><u>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</u></p> <p><u>다.·라.</u> (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|
|--|--|